

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성함제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490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2월 06일
발 의 자: 성함제 의원(1명)
찬 성 자: 경기문, 김성준, 김용일,
박철성, 송도호, 윤기섭,
이병운, 이영실, 임규호
의원(9명)

1. 제안이유

- 일반 노선버스의 운행구간에 마을버스가 운행하는 경우 중복 운행 구간 에서 정류소는 각각 4개소 이내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마을 버스 노 선 선정시 부득이 이면도로를 넣는 등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 으므로 이를 6개 이내로 조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일반 노선버스와 마을버스 정류소 중복 개수를 4개에서 6개 이내로 조정하고자 함 (안 제10조제4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,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 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4항 전단 중 “4개소”를 “6개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문서번호

2023012600000004

미첨부 사유서 (2호)

요청인 : 성흠제 의원

담당 : 오희선 과장
이정수 팀장
김지혜 주무관

접수일 : 2022.1.26.

회신일 : 2022.1.30.

내용문의 : 02-2180-7955

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
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목 차

1. 비용발생 요인
2. 미첨부 근거 규정
3. 미첨부 사유
4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
재정분석담당관
Seoul Metropolitan Council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0조(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계통기준 등)제4항을 개정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함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(2호)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1항제2호)
 -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0조(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계통기준 등)제4항을 개정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세부적인 계획이 없고 범위와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워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오희선

추계세제팀장 이정수

주 무 관 김지혜

☎ 02-2180-7955

e-mail : kjh0123@seoul.go.kr